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987
------------	-----

2023. 09. 05.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3. 08. 10. 박석 의원 발의 (2023. 08. 21. 회부)

2. 제안이유

- ChatGPT 등 직원들이 급변하는 ICT 기술 트렌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의 정보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주기(5년)와 계획 수립·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8개월)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실화하고,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기능 및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5조)
- 나.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9조의 2)
- 다.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지원 보장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의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발의배경 및 주요내용

- 이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ICT) 트렌드 및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주기(5년)에 맞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변경(3년→5년)하고(안 제5조), 스마트도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며(안 제9조의2 신설), 서울시 공무원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 이용료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개정안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 안 제5조(개정)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안 제9조의2(신설)	· 스마트도시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 안 제19조의2(신설)	·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이용료 지원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¹⁾으로 하고 있음.

■ 주요 개정사항 및 검토의견

(1)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1항)

- 안 제5조제1항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각 분야별 정책, 시민·단체·기업·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²⁾.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2021~2025) 주요내용>

(2021.12., 스마트도시정책관)



- 1)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정책
 4. 시민,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5. 정보보안, 이용자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방지
 7.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 ----- 5년마다 ----- ----- -----
② (생략) 1.~8. (생략)	② (생략) 1.~8. (생략)
③ (생략)	③ (생략)

- 현재 상위법인 스마트도시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실화³⁾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시,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여부’를 우대사항으로 정하고 있음(붙임 2 참고).

구분	스마트도시법	전자정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정보통신기술을 도시건설 영역으로 확대 도시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업무 전자화 전자정부 효율적 구현,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 향상	지능정보사회 구현 지능정보사회의 구현 이바지 및 국가 경쟁력 확보
계획수립	스마트도시종합계획 (5년 단위)	전자정부기본계획 (5년 단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3년 단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수립·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본계획이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립주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3) 스마트도시담당관-1913(2022.2.24.),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 관련 헬프데스크 운영 개편 알림 및 계획수립 수요조사
4)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현행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계획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적절하다 사료됨.
- 참고로, 최근 승인된 타 시·도의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해본 결과, 계획수립과 승인에는 약 2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p>※ '22년 이후 계획 승인된 특·광역시 기준, 계획수립 14개월, 승인 7개월 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 총 22개월 - (수립 14개월) '21.3.~'22.4. / (승인 8개월) '22.5.~'22.12. ▶ 부산 : 총 15개월째 - (수립 진행 중) '22.5.~ 현재

(2) 스마트도시위원회 존속기한 규정(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2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5)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 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성·운영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장과 위촉직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디지

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털정책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요 부서의 국장급과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구성하였음.(붙임3 참고)

<p>○ 스마트도시위원회 설치근거</p> <p>- 근거 :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p> <p>○ 스마트도시위원회 기능 및 구성</p> <p>- 기능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p> <p>- 구성 : 30인 이내</p> <p>· 위 원 장 : 시장, 위촉직 1명 공동위원장 / 부위원장 : 디지털정책관, 위촉직 1명 공동부위원장</p> <p>· 당 연 직 : 디지털정책관, 교통·안전·환경·복지·경제·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p> <p>※위원자격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 존속기한 : 없음</p>
--

-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연평균 3회 총 11회 개최되어 디지털정책관의 주요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실시하였는데, 향후 서울시가 스마트도시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실적(2020~2023)>

2020년(3회 운영)	<p>▶ 2020.4.8. 2020년 1차 위원회 개최</p> <p>- '20년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p> <p>▶ 2020.5.21. 2020년 2차 위원회 개최</p> <p>-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방안 자문</p> <p>- 주요사업 추진 경과 보고 및 자문</p> <p>▶ 2020.12.23. 2020년 3차 위원회 개최</p> <p>-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중간 보고</p> <p>-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p>
2021년(2회 운영)	<p>▶ 2021.4.2. 2021년 1차 위원회 개최</p> <p>-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보고</p> <p>- '21년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p> <p>▶ 2021.12.16. 2021년 2차 위원회 개최</p> <p>-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심의</p> <p>- 주요사업 추진 경과 보고 및 자문(메타버스,이사온)</p>

2022년(4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2.17. 2022년 1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향상 시행계획 심의 - '22년 시민 체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발굴 자문 ▶ 2022.7.27. 2022년 2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스마트도시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안건 15건) - 서울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추진계획 자문 ▶ 2022.10.28. 2022년 3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정책관 조직개편 현황 보고 - 디지털정책관 주요 사업 보고 및 자문(안건 9건) - 디지털정책관 현안 보고(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 2022.12.20. 2022년 4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정책관 주요 성과 보고 및 자문(안건 15건)
2023년(2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3.29. 2023년 1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서울시 정보통신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계획(안) 심의 - 2023년 디지털 동행 플라자 조성 자문 - 2023년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 보고 ▶ 2023.7.4. 2023년 2차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서울기록원 주요 업무보고 및 자문

(3)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지원 보장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 조례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개정안에서는 안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서 규정한 ‘소속공무원’의 범위가 너무 넓고 ‘인공

지능 등 신기술'의 종류나 지원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ICT의 특성상 신기술의 종류나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기술들이 업무와 관련성을 규정짓기가 모호한 측면이 존재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 2(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스마트도시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인재개발원이나 후생복지제도 등 별도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⁶⁾은 없는지, 소요 예산은 추계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의 비용추계결과,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는 사유⁷⁾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되었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 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디지털재단에서도 현재 인공지능AI 교육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직무·전문성교육 과정으로 디지털역량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음(붙임4 참고).

7) 민간에서 개발하여 사용중인 인공지능 신기술 이용에 대한 유사사업을 찾을 수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렵다는 입장임(비용추계서 참고)

■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확대(3년→5년)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2027년 12월 31일까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요비용과 지원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입 법 조 사 관 한승윤	02-2180-8207
입 법 조 사 관 전재성	02-2180-8205

[붙임1] 관계법령(p.10)

[붙임2] 국토교통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지침서(2023)(p.15)

[붙임3]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현황 (p.16)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1의2. “국가지법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2. 삭제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발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을 보장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이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자정부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모지침서중 사업개요내용 일부 발췌

□ (목적) 지역 경쟁력 제고와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

- 도시문제 해결과 서비스 여건 개선에 주력했던 기존 사업과 달리, 혁신 육성의 장으로서 스마트시티에 초점
- 안전성·편의성 솔루션 보급에 치중된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 성장 및 특화 발전을 이끄는 거점도시 조성 지원

□ (대상지 및 신청자격) 스마트 거점으로서의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를 선정하며, 아래의 요건을 적용

① (공모대상)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이 응모 가능

- 지자체 주관으로 공모를 신청하되, 기업·공공기관·지역대학 등이 사업에 공동참여*(이노베이션센터 운영을 위한 대학 등 기관참여 필수)
- * 컨소시엄을 미리 구성하여 공모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제안서에 기업 등의 참여방법·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응모 가능
- 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공동 신청 또는 상급 광역지자체와 공동 신청 가능

② (선정 우대사항)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사업제안서 제출일 기준)된 지자체를 우선 선정**

- * 사업제안서 제출일 당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발주 기준
- ** 다만, 평가점수가 기준점(60점) 미달이거나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지자체는 제외

③ (제외대상) 유사 목적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선정됐던 지자체 중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곳은 응모 불가

- * 스마트시티 챌린지('21년까지 선정), 지역거점 스마트시티('22년 선정)
- '23년 솔루션 확산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과 동시 응모 불가
-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 협약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후순위 선정

붙임3**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직책	성명	소속 및 경력
1	위원장	오 세 훈	서울특별시장
2	위원장	정 영 식	동국대학교 시소프트웨어 융합학부 교수
3	부위원장	김 진 만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4	부위원장	김 영 미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5	위원	이 수 연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
6	위원	이 상 훈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
7	위원	강 요 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8	위원	권 용 장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미래교통물류 연구소장
9	위원	김 명 희	신한금융 지주(주) 그룹디지털부문장(부사장)
10	위원	김 범 주	(유)유니티코리아 본부장
11	위원	김 병 준	Edge AI 전문 벤처기업 한테크 대표
12	위원	김 용 구	(주)도화 엔지니어링 사장
13	위원	김 유 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4	위원	김 형 숙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15	위원	문 명 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언더우드 특훈 교수
16	위원	박 석	서울시의회주택공간위원회 의원
17	위원	심 병 효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18	위원	오 영 현	(주)휴맥스 모빌리티 대표이사
19	위원	이 경 순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20	위원	이 지 영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학과 교수
21	위원	이 지 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2	위원	최 소 영	(주)더비엔부사장